

고려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2014. 3. 5. 제정
 2015. 3. 4. 개정
 2015. 5. 18. 일부개정
 2017. 4. 1 일부개정
 2018. 3. 1 일부개정
 2019. 7. 1 일부개정
 2021. 8. 1 일부개정
 2021. 12. 1 일부개정
 <정책기획팀, 대학평의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106조에 따라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자문 기능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 (구성) 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4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

1. 교원 : 5명
2. 직원 : 2명
3. 학생 : 2명
- 3의2. 조교 : 1명 <신설 2021.12.1>
4. 교우 : 2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 2명

제 2 장 조 직

제 4 조 (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정년보장 교원
2. 직원 : 본교 전임직원으로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직원
3. 학생 : 본교 재적생
4. 조교 : 본교 「조교임용 규정」에 의해 임용된 조교 <신설 2021.12.1>

- ② 교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학교규칙에 의한 징계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 ③ 직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학교규칙에 의한 징계
- ④ 학생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수료 또는 졸업
 2. 학교규칙에 의한 징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방문학생 및 해외연수
- ⑤ 조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12.1>
1. 「조교임용 규정」 제11조에 의거 임용이 취소된 때
 2. 학교규칙에 의한 징계
- ⑥ 평의원에게 임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12.1>
- ⑦ 제1항 각 호의 평의원이 징계절차에 회부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개정 2021.12.1>

제 5 조 (교수 평의원 위촉) ① 총장은 교수로서 대표성 있는 사람 1명과 다음 각 호의 캠퍼스별로 각 1명을 교수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1. 서울 인문사회계 캠퍼스
2. 서울 자연계 캠퍼스
3. 세종캠퍼스
4. 녹지캠퍼스(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포함)

② 평의원 후보자는 소속 교수의 협의 또는 선출 등 대표자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로 선정하여야 하며, 단수 또는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제 6 조 (직원 평의원 위촉) ① 총장은 부장급 이상 직원으로서 대표성 있는 사람 1명과 차·과장급 이하 직원으로서 대표성 있는 사람 1명을 직원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위촉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7 조 (학생 평의원 위촉) ① 총장은 학부 학생으로서 대표성 있는 사람 1명과 대학원 학생으로서 대표성 있는 사람 1명을 학생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위촉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7 조의2 (조교 평의원 위촉) ① 총장은 조교로서 대표성 있는 사람 1명을 조교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위촉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12.1>

제 8 조 (교우 평의원 위촉) 총장은 대학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교우 2명을 교우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제 9 조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평의원 위촉) 총장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사람 2명을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제 10 조 (추천기한 등) ① 총장은 평의원 후보자 추천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추천이 없으면 직접 해당 평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평의원의 위촉절차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1 조 (평의회 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④ 평의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 12 조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서 평의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지위의 상실 또는 임기 만료와 함께 평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 3 장 운 영

제 13 조 (회의소집) ① 평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② 평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 요구를 한 때

③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 7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의안을 명시하여 회의일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 개최는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의사 정족수 등) ① 평의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평의회는 총장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심의사항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회의록) ① 평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을 받은 후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회의록을 회의가 있던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의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8.1>

제 16 조 (비밀유지) 평의원 및 간사는 평의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운영 시행세칙) 평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

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8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고려대학교 학칙」 및 그 밖의 본교 학교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교수평의원도 교수의원의 임기만료로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개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캠퍼스 명칭변경은 2017년 3월 1일자로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15조 개정)
-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2항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4조 개정, 제7조의2 신설)